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15. 4. 24. 조례 제2626호 일부개정 2023. 5. 22. 조례 제3508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 5. 22.>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3. 5. 22.>
 - "응급환자"란 질병, 분만,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(危害)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2. "응급의료"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 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한 상담·구조· 이송·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.
 - 3. "응급처치"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,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 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.
 - 4. "자동심장충격기"란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.
 - 5. "심폐소생술"이란 심장정지 환자의 혈액순환 회복을 위해 인공적으로 심장 과 폐의 기능을 대신하여 주는 방법으로 호흡보조 및 흉부압박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안양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응급환자의 보호 및 응급의료의 제공을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

노력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3. 5. 22.]

- 제4조(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 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경기도응급의료시행계획을 반영한 안양시 응급의료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연차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5. 22.>
 -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<신설 2023. 5. 22.>
 - 1. 시민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- 2.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
 - 3. 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의 연계 및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
 - 4.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- 5. 수해(水害), 지진 등 재난유형에 따른 응급의료 대비 · 대응 계획
 - 6. 노인·장애인·외국인·1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 방안
 - 7.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
 - 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. 5. 22.]

- 제5조(응급의료 지원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1. 관내 체육시설,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및 안내표 지판의 설치·유지·보수·관리
 - 2.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유지·보수·관리
 - 3.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,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
 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[전문개정 2023, 5, 22.]

[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, 5, 22.]

- 제6조(응급장비의 설치) ①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3. 5. 22.>
 - 1.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시설
 - 2.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시장이

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장비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 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5. 22.>

[제목개정 2023, 5, 22.]

[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. 5. 22.]

제7조(응급장비의 관리)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,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3. 5. 22.]

[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. 5. 22.]

- 제8조(응급의료교육 등)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의 응급의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5. 22.>
 - ② 시장은 시민, 공무원, 예비군, 민방위대원, 의용소방대원, 자율방범대원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, 심폐소생술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5. 22.>
 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의료교육을 위하여 상설교육장을 설치·운영할수 있으며,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,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5. 22.>
 - ④ 삭제 <2023. 5. 22.>

[제목개정 2023. 5. 22.]

제9조(실태점검)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응급장비와 안내표지판, 제8조에 따른 응급의료교육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5. 22.>

[제목개정 2023. 5. 22.]

[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, 5, 22.]

- 제10조(응급의료의 홍보 등)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캠페인 등 행사 개최, 홍보매체 활용 등 다각적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5. 22.>
 - ②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,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5. 22.>
 -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「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및「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 <개정 2023. 5. 22.>
 - ④ 삭제 <2023. 5. 22.>

[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. 5. 22.]

제11조(비밀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교육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3. 5. 22.>

[종전 제11조 삭제 및 제10조에서 이동 2023. 5. 22.]

제12조(포상) 시장은 응급의료교육 또는 응급처치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「안양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3, 5, 22.]

부칙

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5. 22. 조례 제350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